

도서관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of Organizing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for Library Policy Implementation

조 현 양(Hyun-Yang Cho)*

이 재 원(Jae-Won Lee)**

< 목 차 >

| | |
|---------------------------|-----------------------|
| I. 서론 | 1. 미군정기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제1, 2공화국 |
| 2. 연구 방법 | 3. 제3, 4공화국 |
| 3. 선행 연구 | 4. 제5공화국 |
| II. 정책의 개념 및 도서관정책 | 5. 제6공화국 |
| 1. 정책의 개념 | 6. 문민정부 |
| 2. 도서관 정책의 개념 | 7. 국민의정부 |
| 3.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 | IV. 도서관정책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 |
| III. 우리나라 도서관정책 행정체계 변천과정 |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도서관의 기능은 단순히 문화유산의 보고 및 문화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종합적 기능을 포괄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거의 교육부와는 달리 인적자원과 지적자원을 종합 개발·관리하는 법적인 기반과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도서관이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 발전하려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도서관정책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서관업무를 직접 관장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서관정책 집행이 가능하며, 도서관 간 협력이 용이할 뿐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도서관정책, 행정체계, 행정조직

ABSTRACT

Libraries' functions include not only being a treasure house for cultural heritage and cultural development but also comprehensive functions such as lifelong learning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t the present time,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MOE) has legal infrastructure and leadership which can develop and manage the nation's overall human and intellectual resources unlike previous Ministry of Education. For library to evolve as a stronghold for developing human resources and lifelong education, library policies must be unified into MOE which can provide the needed leadership. With direct management of libraries by MOE, which is currently overseeing and coordinating the nation's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library policies can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mutual cooperation between libraries will be easier, and the link between library policies and the national and reg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can be made.

Key Words: Library Policy,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Administration Organization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ycho@kyonggi.ac.kr)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wodnjsdl@moe.go.kr) (공동저자)

• 접수일: 2005년 11월 24일 •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12월 5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방 이후 50여년 만에 우리나라에 도서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도서관정책이 수립되었다. 2000년 2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도서관 정보화 종합추진계획 수립' 지시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정보화 종합추진계획'(2000. 3)과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03~2011)'(2002. 8)을 수립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2002. 8)과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2002. 11)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결정한 지시사항을 집행하는 성격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정보사회의 도래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국민들은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로서 우리 도서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제7차 교육과정도 시행됨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시설로서 학교도서관을 보고 있다. 언론매체에서도 KBS 9시 뉴스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의 중심기지'라는 집중기획 보도와 MBC의 '기적의 도서관'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한 것을 계기로 도서관을 21세기의 지식의 보고로 집중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주변 환경은 도서관에 매우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도서관계 내부적으로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법적으로는 도서관정책 기능이 문화관광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설립주체와 정책주체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문화관광부령 제99호)이 개정되면서 도서관박물관과를 없애고 문화정책과에서 도서관정책의 총괄적인 정책업무만 추진하고 세부적인 정책·집행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결국 예전의 교육부(문교부) 시절로 회귀하는 느낌마저 드는 것이 도서관계 작금의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바람직한 도서관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정부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법령(대통령령, 부령)의 제(개)정 내용을 통하여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의 변천과정을 연구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기의 도서관 정책 및 소관 부서에 관한 연구는 미 군정청이 본국에 보고한 문헌을 통해서, 제1공화국(정부수립)부터 제5공화국(1981년~1988년)까지는 정부 조직의 변천사 등 관련 문헌과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22호)의 제정에서 전문개정(대통령령 제11959호)까지의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그리고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문교부(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제(개)정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1990년 1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문화부가 탄생하게 됨에 따른 문화부 직제의 제(개)정 내용과 1993년 3월 6일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됨과 함께 발효된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4442호) 제(개)정 내용이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1998년 2월 '과' 또는 '담당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개)정 내용과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문화체육부령)의 제(개)정 내용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3. 선행연구

도서관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관중별 즉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나누어서 수행되어 왔다. 국가발전과 공공도서관 정책,¹⁾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 정책,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²⁾ 등 관중별 정책방향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도서관정책 전반을 다루는 연구는 오히려 드문 편이다. 도서관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한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³⁾과 한국정부의 도서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⁴⁾을 제시한 학위논문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서관의 사회적 위상 증대와 더불어 시민과 도서관 편집팀에서 해방 이후의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 관할 부처 관리체계를 다루는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도서관정책 분야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II. 정책의 개념 및 도서관정책

1. 정책의 개념

정책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은 다양하게 내리고 있다. Lindblom⁵⁾은 정책을 '상호 협력을 거쳐

-
- 1) 박상균, "국가발전과 공공도서관 정책," 도서관보(동대문), 8호 (1981, 12).
 - 2) 한상완,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운영(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1).
 - 3) 이봉순 외, "한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창립20주년기념논문집(1979), p.7.
 - 4) 정진해, 한국정부의 도서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97).

여러 사회집단이 도달한 결정', Easton⁶⁾은 '정치 체계가 내린 권위적 결정'으로, 그리고 Dror⁷⁾은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 과정을 통하여 주로 정부 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래 지향적 행동지침을 말하며,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최선의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훈⁸⁾은 정책을 '각종 정치적·행정적 과정을 거쳐 권위 있게 결정된 공적 목표'로, 김신복⁹⁾은 '공공 기관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의 주요 지침'으로, 그리고 정정길¹⁰⁾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기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정책은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정책은 정책목표를 지닌다. 비록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표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정책은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둘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셋째,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세밀한 부분까지 정책 속에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정책을 원칙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의 기본방침만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넷째,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보통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천명된 것이다.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라는 개념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조직은 매우 중요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행정조직의 공식적인 권한은 정치기관인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는 복잡·다기하여 그 해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행정조직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도서관정책의 개념

도서관정책을 이봉순¹¹⁾은 '도서관 봉사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공권성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기본

5) Lindblom, C. The Policy-making Process(N. J.: Prentice-Hall, Inc. 1968), p.71.

6) Easton, D. A. Systems of Political Life(New York: John Wiley & Sons, 1965), p.32.

7) Dror, Y. "The Planning Process: A Facet Desig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Vol XIX, No.1. (12, 1968).

8) 유훈, 행정학원론(서울: 법문사, 1985).

9) 김신복, 유훈, 정책론(서울: 법문사, 1993).

10) 정정길, 정책학 원론(서울: 대명출판사, 2004).

방침 내지 지침으로, 공공도서관의 제도와 운영에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도서관 행정에 있어서는 그 준거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이라고, 이용훈¹²⁾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과 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도서관들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서 도서관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권영찬¹³⁾은 '도서관정책은 도서관 봉사활동에 대하여 국가의 공권성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기본방침 내지 지침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서관정책은 도서관 제도와 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도서관행정의 근거가 되는 원리가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또한, 심효정¹⁴⁾은 도서관정책을 '도서관의 미래에 관한 국가차원의 계획을 말한다. 즉, 정부의 도서관에 관한 행정상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도서관정책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적,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도서관 관계 법규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또한 실시과정을 획책한 기본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도서관정책은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이나 지침 등을 제도화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정책의 수립은 도서관의 기본방침이나 지침 등의 제도화를 통하여 도서관정책의 집행을 강제화 또는 공식화하는 것이다. 제도화의 방법으로는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행정부서의 조직화, 도서관 관련법이나 규정 등의 제정을 통하여 정책집행을 강제화하는 법제화, 선언적인 의미의 헌장 제정, Standard, Guidelines 등의 이행표준을 정하여 정책을 공식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공식적인 기본방침이 되는 것이다.

3. 도서관정책의 목적·목표

도서관 정책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도서관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의 목적을 세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는 국가발전에 직결되는 정보지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기구가 되는 것이다. 즉 경제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인 활력소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장치가 되도록 도서관이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은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지식과 복지를 형성하는 터전이 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11) 이봉순, 상계서, p.7.

12) 이용훈, "참여정부의 도서관정책 : 자율과 분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41권, 1호(2004. 1), pp.31-41.

13) 권영찬, "해방이후 도서관정책 개관,"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4-29.

14) 심효정, "광역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현황," 시민과 도서관, 제3권, 1호(2002. 3), pp.3-28.

둘째, 도서관은 학교교육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존재하는 핵심기구이어야 한다. 현대에는 학술정보가 막대한 양으로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교사와 학생간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도서관에 소장된 풍부한 자료를 매개로 하여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에 대한 도서관의 참여는 적극적인 노력과 면밀한 계획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교육 역시 도서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도서관은 평생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발전에 수반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지식의 습득과 가치관의 확립을 통하여 완전한 인격체로 사회화하는데 도서관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풍부한 창의력을 유발하며 지식과 창의력을 쌓기 위하여 충분한 문헌 자료가 그 자원이 되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관은 지식과 창의력의 터전이 되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목적이 충족될 때라야만 도서관은 국가와 사회, 경제발전에 있어 그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향상이나 윤리관의 확립 또는 자아개발을 위한 지식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의 한 제도로서 존립하게 될 것이다.

Ⅲ. 우리나라 도서관정책 행정체계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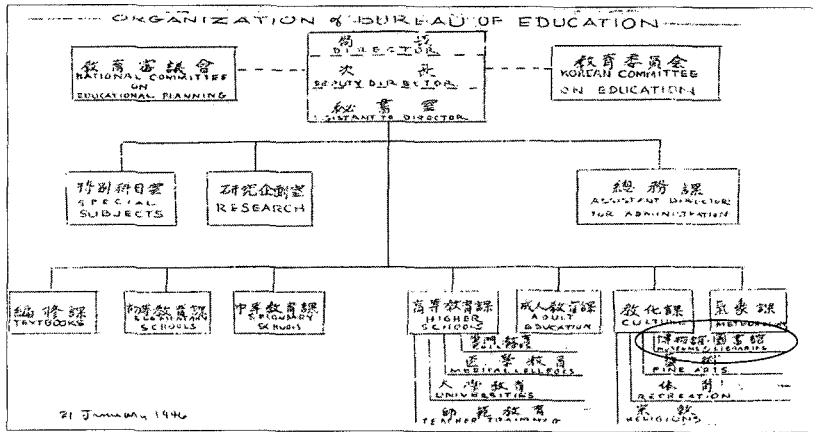
1. 미군정기(1945. 8~1948. 10)

정태수¹⁵⁾의 연구에 따르면, 미군정기의 도서관에 대한 행정조직은 1945년 10월 12일에 학무국-예술·종교과-예술계¹⁶⁾에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후 예술·종교과를 문화과¹⁷⁾로 개칭해서 '학무국-문(교)화과-박물관·도서관계'로 확대 개편하여 Yun, Se-ku씨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를 볼 때 미군정청은 도서관을 별도의 '계' 단위로 구성할 만큼 중요도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에도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원조심의회'를 각 분야를 대표하는 19명의 저명한 한국인들로 구성하였으며, 10명의 전문가를 고문역으로 미국에서 파견하여 1년간 학무국에 근무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전문가 10명 중 1명이 도서관 전문가이다.

15)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상): 1945~1948(서울: 흥지원, 1992).

16) 1945년 12월 29일 미군정청이 본국에 보고한 주말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유적 및 도서관이 서울의 일본인 거주지역으로부터 국립박물관과 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17) 문화과에서 이룩한 일은 1945년 10월 5일 국립도서관의 일본인 관장이 한국인으로 교체되었으며, 1946년 1월 15일 15만권의 장서를 전쟁 중에 보관해 두었던 간성에서 국립도서관으로 이관하였다.



〈그림 1〉 미군정청 학무국 직제(○부분이 박물관·도서관계)

2. 제 1, 2 공화국(정부수립~19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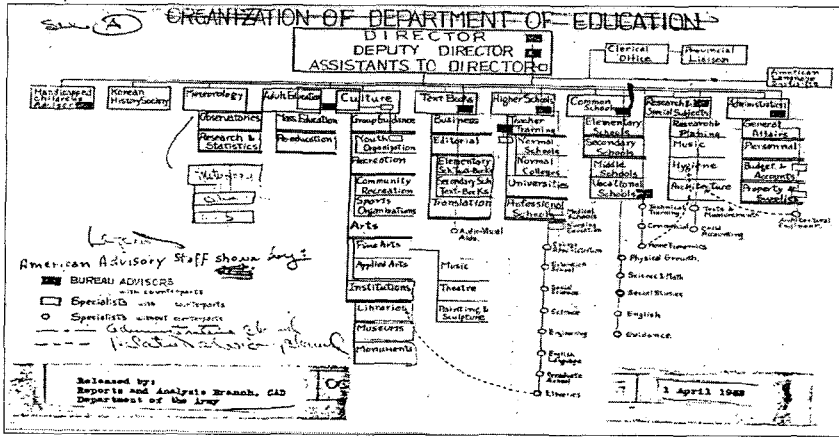
도서관 정책을 관할하던 미군정청의 학무국이 1946년 3월 29일자로 군정법령 제64호에 의해 문교부로 승격하여 7국 1관 21과 20계로 개편되었다. 정부수립 후 문교부는 비서실 등 1실 5국 22과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도서관 업무는 문화국 교도과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949년 5월에는 대통령령 제97호에 의거 국립도서관이 문교부 소속기관으로 발족한다. 미군정 문교부 고문 언더우드 박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인의 조언으로 문교부가 국립도서관이나 박물관을 관할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수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도서관정책을 조직화하는 데 첫 단추를 잘 못 끼웠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그 시기의 한국 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Peabody 교육사절단에 Mrs. Swiger, J. M. Elrod, R. Bergess와 같은 도서관 전문가가 포함되었고, 그리고 미군정기에 '박물관·도서관계'가 있었음에도 정부수립 직제에 도서관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표 1〉 제1, 2공화국 도서관 행정조직 변천과정

| 일자 | 행정조직 | 근거 | 비고 |
|-------------|-----------|-------------------|------|
| 1948. 11. 4 | 문화국-교도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22호 | 제정 |
| 1950. 3. 31 | 문화국-교도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308호 | 폐지제정 |
| 1955. 2. 17 | 문화국-사회교육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1000호 | 전문개정 |
| 1961. 10. 2 | 문예국-사회교육과 | 문교부직제 각령 제180호 | 폐지제정 |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4호)



〈그림 2〉 미 군정청에서 작성한 문교부 조직도(초안)

3. 제3, 4 공화국(1961년~1981년)

문교부는 '문교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64년부터 교육자치제를 부활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관할 부서가 내무부와 문교부로 이원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3년 10월 28일 도서관법, 1965년 3월 26일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어 도서관정책을 법제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법에 의거 국립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1963년 11월 26일 국회도서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표 2〉 제3, 4공화국 도서관 행정조직 변화과정

| 일자 | 행정조직 | 근거 | 비고 |
|--------------|-----------------|--------------------|------|
| 1961. 10. 2 | 문예국-사회교육과 | 문교부직제 각령 제180호 | 폐지제정 |
| 1963. 12. 16 | 문예교육국-사회교육과 | 문교부직제 각령 제1737호 | 전문개정 |
| 1968. 7. 24 | 사회교육국-사회교육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3512호 | 일부개정 |
| 1978. 3. 14 | 사회국제교육국-사회교육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8889호 | 전문개정 |
| 1981. 11. 2 | 사회직업교육국-사회교육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10535호 | 전문개정 |
| 1986. 8. 25 | 사회국제교육국-사회교육제도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11959호 | 전문개정 |

4. 제5 공화국(1981년~1988년)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로 채택된 교육개혁은 전인교육, 정신교육, 과학교육, 평생교육의 4대 지표를 걸고 추진하였으며, 1981년 6월 23일 문화공보부는 '80년대 문화정책'을 발표하였다.¹⁸⁾ 이 정책에서 '군 단위에 1개의 도서관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하여 소규모 지역사회 도서관을

18) 박상균, 상거서.

설립할 방침'이라고 의지를 표명하였으나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반 공약이 되고 말았다. 1986년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도서관 확충계획과, 그 해 1월에 문교부장관이 도서관법 개정 의사를 밝혔으며, 1986년 5월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도서관 체제 확립 및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출판하였다. 1983년 3월 12일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은 도서관행정 전담부서 설치, 도서관법 개정, 시설과 장서를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서관 발전방안을 당 정책사업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 11월 28일 24년 만에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이 개정되었다.

제5공화국은 5·18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기치로 도서관을 활성화 하려는 정책의지는 여러 곳에 보인다. 우선 제대로 된 도서관정책이 성공여부를 떠나 수차례 입안되었고, 도서관계의 숙원사업이던 도서관법 개정을 이루었다. 공공도서관을 사회교육 기관으로 활용하여 각종 독서회를 구성하여 국민독서풍토를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들의 이전계획 수립 및 신축이 이루어졌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1988년 5월 28일 현재의 반포동으로 신축·이전하였으며, 대전직할시는 대통령이 연두순시에서 동양 최고의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아 1984년 12월 11일 '한밭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7월 1일 개관하였다.

〈표 3〉 제5공화국 도서관 행정조직 변천과정

| 일 자 | 행 정 조 직 | 근 거 | 비 고 |
|-------------|-----------------|--------------------|------|
| 1981. 11. 2 | 사회직업교육국-사회교육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10535호 | 전문개정 |
| 1986. 8. 25 | 사회국계교육국-사회교육제도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11959호 | 전문개정 |

5. 제 6 공화국(1988년~1993년)

1990년 1월 15일 노태우대통령은 문화정책에 대한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90년 1월 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문화부를 탄생시켰다. 문화부의 신설과 함께 1991년 3월 8일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52호)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교육부 소속기관이던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게 되어 도서관에 대한 정책 및 행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교육부-사회교육국-사회교육과'에서 '문화부-문화정책국-도서관정책과'로 변경되었다.

문교부는 도서관계의 강력한 요구로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이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도서관발전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위원회의 정책제안에는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도서관 행정 전담부서를 위해 문교부에 도서관정보과(과장: 4급 사서관), 그리고 지금의 시·도교육청인 교육위원회에 도서관정보계(계장: 5급사서관)를 신설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며 전문직 부관장제 실시 등을 담고 있다. 1989년 2월

27일 문교부직제(대통령령 제12627호)에 의해 문교부에 처음으로 사서(사서보: 7급)가 배정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서들이 교육부의 도서관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받은 도서관에 대한 서러움과 괘시를 문화부의 도서관 전담정책부서 신설이라는 달콤한 조건에 사서들은 화답하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문화부 이관을 실현시켰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정책 전담부서가 문화부로 이관되었지만, 문화부는 공공도서관을 교육부는 대학 및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도서관정책 이원화라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였다.

〈표 4〉 제6공화국 도서관 행정조직 변천과정(교육부)

| 일 자 | 행 정 조 직 | 근 거 | 비 고 |
|--------------|-----------------|--------------------------|------|
| 1988. 11. 22 | 사회국제교육국-사회교육제도과 | 문교부직제 대통령령 제12548호 | 일부개정 |
| 1991. 4. 8 | 사회국제교육국-사회교육제도과 | 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3343호 | 일부개정 |

〈표 5〉 제6공화국 도서관 행정조직 변천과정(문화부)

| 일 자 | 행 정 조 직 | 근 거 | 비 고 |
|--------------|-------------|--------------------------|------|
| 1990. 11. 14 | 어문출판국-도서출판과 | 문화부직제 대통령령 제13163호 | 폐지개정 |
| 1991. 4. 8 | 어문출판국-도서출판과 |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3343호 | 일부개정 |
| 1991. 12. 17 | 어문출판국-도서출판과 |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3343호 | 일부개정 |

6. 제 6 공화국(문민정부 : 1993년~1998년)

1993년 3월 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3일 문화체육부및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4442호)의 개정에 따라 '도서관정책과'가 '박물관과'와 통합하여 '도서관박물관과'로 축소 개편되었다. 또한, 1993년 7월 23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대통령령 제14339호)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공도서관의 관장 자리를 두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조직 및 명칭을 변경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교육청 담당자들은 국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시설이니 사회교육시설이라고 강변하나 자리보존의 의미 외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특히, 1997년 몰아닥친 IMF는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 다 주었으며, 도서관계에도 예외 없이 조직개편을 통한 인원감축, 예산축소 등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 때부터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문민정부시절에는 대통령의 여식이 문헌정보학과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 도서관계가 큰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그 결과는 참으로 초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선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축소 개편되었으며, 관장 자리를 둘러싼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민간위탁 문제 등 참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시기였다.

〈표 6〉 문민정부 도서관 행정조직 변천과정(교육부)

| 일 자 | 행 정 조 직 | 근 거 | 비 고 |
|-------------|--|-------------------------------|------|
| 1993. 3. 9 | 사회국제교육국-사회교육제도과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3951호 | 일부개정 |
| 1994. 5. 16 | 대학정책실-학술정보과 (학술정보자료, 대학·학교도서관) 사회국제교육국-사회교육진흥과 (시·도교육청 공공도서관)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3343호 | 일부개정 |
| 1998. 2. 28 | 평생교육국-평생학습진흥과 (시·도교육청 공공도서관) 교육정보화국-교육정보화기획과 (대학·학교도서관 정보화)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15호 | 일부개정 |

〈표 7〉 문민정부 도서관 행정조직 변천과정(문화부)

| 일 자 | 행 정 조 직 | 근 거 | 비 고 |
|--------------|---------------|--------------------------------|------|
| 1993. 3. 6 | 생활문화국-도서관정책과 |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249호 | 일부개정 |
| 1994. 12. 23 | 생활문화국-도서관박물관과 |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442호 | 일부개정 |
| 1995. 1. 28 | 문화정책국-도서관박물관과 | 문화부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517호 | 일부개정 |

7. 제 6 공화국 (국민의 정부: 1998년~2003년)

2000년 3월에 문화관광부에서는 '도서관 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방 후 반세기 만에 도서관계에 정책다운 도서관정책을 내놓는다. 이어 2002년 8월에는 도서관 발전계획인 '미래형 지식정보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한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2003~2011)'을 수립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도 2002년 8월에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과 2002년 11월에 '대학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게 되었다. 2000년 4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정보화추진기획단'이 '국' 단위(3팀)의 규모로 구성되며, 제1팀인 교육정보화기획팀에서 대학 및 학교도서관 업무를 본격적으로 관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도서관정책이 활성화되는 이면에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도서관에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자연스럽게 조성되었다. 사회구조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하게 변하면서 도서관에 지식의 보고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고, 또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필수적인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국민의 정부는 도서관계에 있어서 정책 중흥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이 책을 좋아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한 도서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언론에서도 때를 같이하여 도서관을 지식·정보화시대의 첨단기지로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도서관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표 8〉 국민의 정부 도서관 행정조직 변천과정(교육부)

| 날 짜 | 행 정 조 직 | 근 거 | 비 고 |
|-------------|--|-----------------------------------|------|
| 1998. 4. 30 | 평생교육국-평생학습진흥과 (시·도교육청 공공도서관) 교육정보화국-교육정보화기획과 (대학·학교도서관 정보화)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17호 | 일부개정 |
| 1999. 5. 24 | 고등교육지원국-대학학사제도과 (대학도서관)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44호 | 일부개정 |
| 2001. 1. 31 |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정보화지원담당관 (학술정보유통 지원) 인적자원정책국-조정2과 (대학·학교도서관) |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교육부령 제779호 | 일부개정 |
| 2003. 7. 25 | 국제교육정보화국-교육정보화지원과 |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17호 | 일부개정 |

〈표 9〉 국민의 정부 도서관 행정조직 변천과정(문화부)

| 일 자 | 행 정 조 직 | 근 거 | 비 고 |
|-------------|---------------|--------------------------------|------|
| 1995. 1. 28 | 문화정책국-도서관박물관과 | 문화부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4517호 | 일부개정 |

IV. 도서관정책 추진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

도서관계는 그동안 우리나라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도서관 정책부처의 이원화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정책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대다수 논문이 정책부처 이원화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볼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개인까지도 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가 다원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도서관정책이나 행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부정책이나 행정도 다원화된 체계를

갖는 경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다.

도서관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부처의 이원화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도서관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일원화하는 방법이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은 교육부가, 그리고 프랑스, 덴마크는 문화부에서 도서관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 통치체제의 형태나 문화, 행정환경과 여건 등이 서로 다름에서 오는 상이함일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 상설독립기구인 NCLIS를 설치하여 도서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도서관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타 국가들은 문화부나 교육부 가운데 하나의 부처 기능에 포함시키되 도서관 관련 행정체계나 정책수립은 단일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표 10> 세계 주요국가의 도서관정책 행정체계 및 관련 법¹⁹⁾

| 국 가 별 | 행 정 체 계 | 관 련 법 |
|-------|--|--|
| 미 국 | 교육부 국가문헌정보위원회(NCLIS) (대통령 직속 상설독립기구) | 도서관 건축법 및 봉사법 (주 별로)도서관법 |
| 영 국 | 교육과학부-도서관국 | 대영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박물관법 |
| 프랑스 | 문화부-도서관국 | 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
| 덴마크 | 문화부-공공도서관지도국 (외청)5개과, 본부 내 도서관과 | 도서관법, 공공도서관법 |
| 일 본 | 문부성-사회교육과, 학습정보과 통신산업성-정보처리진흥과 | 도서관법, 학교도서관법, 국회도서관법, 대학설치기준령,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법 |
| 중 국 | 문교부-도서관과 | 공·사립공공도서관법 전국도서관교육법 중화민국도서관 기준 |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도서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하나의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도서관 관련 정책기능이 문화관광부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설립주체와 지도·감독 및 운영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의 90% 이상이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에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은 시·도교육청이, 대학도서관은 소속 대학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어서 대다수의 도서관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로 되어 있다.

도서관의 또 다른 이원화의 문제는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이다. 1949년 제정·공포된 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952년에 시행에 들어 간

19) 문화체육부 도서관정책 설명자료.

교육자치제도가 1961년 5·16군사 정변으로 인하여 1962년 일반 행정에 합병된다. 이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아 1964년 1월부터 교육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공공도서관이 관할 부서에 따라 내무부와 교육부로 분할되어 현재에까지 이른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이원화 문제는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다만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논의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두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도서관을 설립하고 예산 및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도서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도서관정책 업무를 현재의 문화관광부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고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도서관 정책업무를 일원화해야 하는 당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은 학교시설의 일부로서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육인적자원부를 벗어나서는 정책집행이 어렵다. 도서관정책의 목적에서 언급하였듯이 도서관은 학교교육의 필수적인 도구로서 학교의 핵심적인 시설이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도서관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어야 하고, 교육 역시 도서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이원화 문제는 1964년 교육자치제가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논의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도서관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도서관박물관과 폐지는 정당한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실적으로 대학·학교도서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등 도서관 운영 주체의 다원화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²⁰⁾고 인정하듯이 현실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서관정책을 관장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서관정책 실현이 가능하고 도서관 간의 협력과 도서관정책에 대한 정부 내 정책조정이 용이하며 국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지식·정보의 활용능력이 개인 및 조직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 도서관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핵심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도서관정책의 목적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의 터전이다. 주5일제 수업과 주 5일제 근무 등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도서관은 도서관 본래의 기능은 물론 평생교육센터, 정보문화센터, 인적자원개발센터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인적자원부로 정책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 즉 시·도교육청,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 관종 별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시·도교육청 및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 국가대표도

20)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답변.

서관으로서의 역할과 도서관 표준화업무, 그리고 공공도서관 정책 및 독서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과정 개발과 독서교육, 독서치료 과정 등을 효과적으로 개발·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 대학도서관 정책과 업무 표준화, 그리고 학술정보유통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전문·특수도서관에 대해서 부·처에 관계 없이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의장: 교육부총리)를 통해서 정책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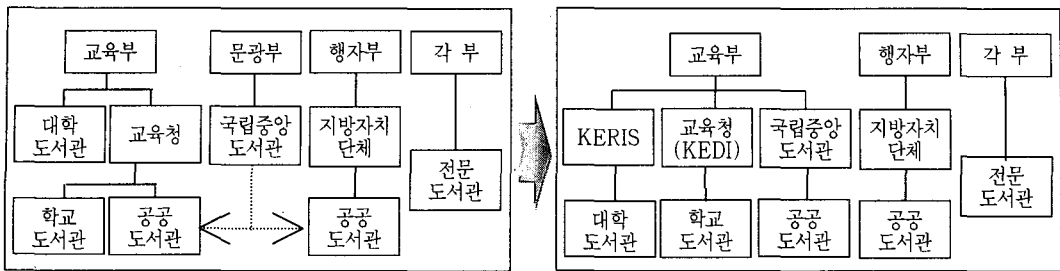
〈표 11〉 관종별, 행정부처별 도서관 수(21)

| 관종별 | 관 수 | 관할부처 및 운영주체 | | 관 수 |
|----------|-------|-------------|-------------|--------------------|
| 국립중앙도서관 | 1 | 문화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 | 1 |
| 공공도서관 | 420 | | 특수·전문기관 | 561 |
| 대학도서관 | 416 | 교육부 | 교육청 | 219(공공), 8,181(학교) |
| 학교도서관 | 8,181 | | 대학 | 416 |
| 전문·특수도서관 | 561 | 행정자치부 | 자치단체(시·군·구) | 180(공공), 21(사립) |
| 국회도서관 | 1 | 국회 | 국회 | 1 |
| 계 | 9,580 | 계 | | 9,580 |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도서관 행정체계는 매우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의 정책부처가 설립주체와 정책주체가 상이한데서 오는 정책의 이원화에 따라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정책추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도서관정책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으로는 평생학습 및 인적자원개발을 총괄하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도서관 정책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도서관정책을 전담할 행정조직인 도서관정책과(가칭)를 신설하여 도서관을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과 연계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²²⁾ 그렇게 되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의 행정체계가 체계적으로 조직화 될 것이다. 도서관정책과의 주요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중심으로 3계 수준으로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계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입안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제2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관련 정책입안 및 학술정보유통 운영·지원, 그리고 제3계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학교도서관 관련 정책입안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1) 2003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개편 자체검토자료.

22) 2003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개편 자체검토자료.



〈그림 3〉 도서관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체계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이 대학입시 및 교원평가, 교직단체 문제 등 쟁점화 되는 정책이 너무 많아 도서관정책이 정책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그러나 문화부에 도서관업무를 이관할 당시 도서관정책 담당부서의 신설을 최우선 순위로 하였으나 불과 2년도 못 되어 도서관박물관과로 축소 개편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현재는 도서관박물관과마저 없어지고 문화정책실-문화정책과에서 총괄적인 정책업무를 추진하고 세부적인 정책·집행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렇듯 도서관정책을 어느 부처에서 전담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슈화 하지 않는 한 중앙행정기관에 전담부서를 고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차선책은 도서관의 핵심적인 정책업무만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집행적인 업무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산업의 중요성, 지식·정보 유통체제 발전의 당위성 그리고 도서관의 필요성 등은 주지의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거의 전무했다. 국가단위의 도서관정책의 부재 또는 미흡은 도서관 발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체제가 미흡함을 의미한다. 국가 차원의 도서관정책의 부재 또는 미흡함의 가장 큰 이유로 도서관정책의 이원화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서관 정책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하되, 대다수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의 주체인 교육인적자원부로 도서관 정책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은 학교시설의 일부로서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교육인적자원부를 벗어나서는 정책집행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이원화 문제는 1964년 교육자치제가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지만 현재 도서관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조차도 도서관 운영 주체의 다원화로 정부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어 도서관 정책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서관정책을 관장함으로써 체계적인 도서관정책 실현이 가능하고 도서관 간의 협력과 도서관정책에 대한 정부 내 정책조정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넷째,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평생교육센터, 정보문화센터, 인적자원개발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다섯째, 교육인적자원부로 정책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시·도교육청,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서 관종별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이 갖는 주요 기능인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도서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체계 조직화 방안이 될 수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도서관에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도서 보관(Container)기능에서 정보 집접(Connector) 기능을 요구하며, 정보 및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기능과 지역단위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내의 환경도 교육인적자원부에 국가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하였으며 주5일제 근무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도서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주5일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6+1체제(6일 근무+1일 휴무)에서 5+2체제(5일 근무+2일 휴무)가 아니라 5+1+1체제(5일 근무+1일 학습+1일 휴무)라는 것을 명심하여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유훈. 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1985.
 김신복, 유훈. 정책학. 서울: 법문사. 1993.
 정경길. 정책학 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2004.
 정태수. 미군정기 한국교육사 자료집(상): 1945~1948. 서울: 홍지원 1992.
 행정자치부. 정부조직변천사: 17. 교육부. 서울: 행정자치부 1998.
 한상완. 지식기반사회의 학교도서관 정책방향: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검토작업단 구성·운영.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1.

- 정진해. 한국정부의 도서관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97.
- 이용훈. "참여정부의 도서관정책 : 자율과 분권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도서관." 국회도서관보, 제41권, 1호(2004, 1) pp.31-41.
- 이봉순 외. "한국의 도서관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학과 창립20주년기념논문집, 27. 1979.
- 이용훈. 국가 도서관정책의 방향과 전망.
- 권영찬. "해방이후 도서관정책 개관."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4-29.
- 시민과도서관편집팀. "도서관박물관과 폐지는 정당한가: 도서관박물관과 폐지관련 질의서 및 답변내용."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39-42.
- 시민과도서관편집팀. "도서관운동연구회 도서관정책 제안서 분석."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109-119.
- 시민과도서관편집팀. "도서관정책과 17대 총선."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5-8.
- 이혜연. "도서관정책의 방향 모색과 민간단체의 역할."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67-108.
- 이윤희. "도서관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책, 법규, 절차개발과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129-132.
- 권영찬. "정부가 말하는 도서관이 나아갈 길."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30-46.
- 임은주. "정보사회의 도서관정책."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57-65.
- 심효정. "도서관정책 관할 부처 및 관리체계에 관한 고찰." 시민과 도서관, 제5권, 1호(2004, 3), pp.31-38.
- 심효정. "광역자치단체 도서관 정책 현황." 시민과 도서관, 제3권, 1호(2002, 3), pp.3-28.
- 박상균. "국가발전과 공공도서관 정책." 도서관보(동대문), 8호(1981, 12).
- 이용남.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동 분석과 활성화 방안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4호(2003, 12).
- 이용남. "1994년도 도서관계의 회고와 전망." 국회도서관보, 통권 237호(1995, 2).
- 이용남.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동분석과 활성화 방안 고찰." 한국비블리아, 제14권, 2호(2003, 12).
- 이용남.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4호(2003, 12).
- Lindblom, C. *The Policy-making Process*. N. J.: Prentice-Hall, Inc. 71. 1968.
- Easton, D. *A System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32. 1965.
- Dror, Y. "The Planning Process: A Facet Desig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 Vol XIX, No.1. (12, 1968).